

# 건설관련 법률상담 사례

자료제공 권진웅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고문변호사

##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사 기간·대금 증액 범위

Q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사기간 또는 공사대금의 증액이 어느 범위에서 인정되는지?

A 천재지변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앙이나 괴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강력한 지진, 화산의 폭발 등을 의미한다. 그와 같은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상당한 정도의 공사기간의 연장 및 이에 따른 공사금액의 증액 등이 인정될 것이다.

천재지변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당초 약정된 공사기간 중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장기간에 걸친 비 등으로 공사의

차질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공사기간의 연장 등이 가능하다.

## 회사의 여유자금을 주식투자 할 경우

Q 회사의 목적사업에 적시되지 아니한 여유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A 회사의 여유자금을 일시적으로 주식에 투자할 경우 손실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미리 이사회 의결을 받아두는 것이 향후 대표이사의 임무위배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고, 향후 지속적인 주식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정관의 개정을 통하여 주식 투자업 등을 사업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 선행하는 공사로 인한 공사지연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

**Q** 선행하는 건축공사의 지연으로 당초 예정된 설비공사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공사시간의 연장 또는 돌관적용에 따른 공사대금의 증액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그에 따른 절차는?

**A** 건축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되어 부득이 설비공사의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이는 도급인의 책임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공시기간의 연장은 허용될 수밖에 없다.

상대방이 예정된 공사기간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장비와 인력의 집중투입, 휴일공사 등을 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공사비가 증액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돌관공사비(Acceleration Costs)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그 구체적인 금액의 범위는 상호 협의에 의해 정할 수밖에 없으며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추가공사비로서 별도 청구하여야 한다.

**A** 연도를 설치한 후 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의 유무가 정해질 수밖에 없다.

통상적으로는 연도설치 작업을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콘크리트 타설 후 후속 작업이 계속되게 되므로 현장을 완전히 인도하고 관리책임이 없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에 기한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다른 업체의 과실을 주장할 수는 없고, 사후에 위 연도 고정용 피스를 떼어낸 업체에 대하여 그 과실에 따른 책임을 물어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설비나 콘크리트 타설업체 모두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이고, 보험 가입자인 2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 제8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에 대하여는 구상의무가 없다.☹

## 타업체 실수로 산재가 발생한 경우

**Q** 연도를 설치한 후 다른 업체의 근로자가 작업상 필요에 의하여 연도 고정용 피스를 임의로 떼어낸 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업체 인부가 그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려다가 추락하여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콘크리트 타설업체가 가입한 근재보험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사안의 대응방안은?